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2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이영실, 강동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재진,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아이수루,  
,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이병도,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임춘대,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한 · 신, 홍국표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 위촉시 다양한 사회계층 중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제5항 제4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⑥ ~ ⑩ (생략)</p>	<p>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u></p> <p>⑥ ~ ⑩ (현행과 같음)</p>